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9384 제안연월일: 2025. 3. .

제 안 자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2052호)	정부	2024.7.22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8.26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2200호)	정부	2024.7.24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8.26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- 가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26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나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3. 6.)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,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호,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호 중 "미성년자"를 "18세 미만인 사람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4호 중 "경우"를 " 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 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 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	제21조(결격사유)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	
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.	
<u>1. 미성년자</u>	<u>1. 18세 미만인 사람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	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
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	등) ①
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	
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	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
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	
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	4
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	
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	<u>경우.</u> <u>다만, 「소</u>
지난 <u>경우</u> <u><단서 신설></u>	<u> 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</u>
	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

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 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한다.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5. ~ 8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